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53 |
|----------|-----|

2022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2년 8월 29일

다. 회부일 : 2022년 9월 2일

라. 상정일 :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9월 26일 상정·보류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1월 2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회승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고령사회를 맞아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출연 개요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운영시설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5개소(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예정))

| 명 칭 | 소재지 | 연면적 | 층수 | 비고 |
|-------------|----------------|--------|---------|--------------|
| 50플러스 서부캠퍼스 | 은평구 통일로 684 | 3,956㎡ | 지하1~지상4 | '16.5 개관 |
| 50플러스 중부캠퍼스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4,509㎡ | 지하1~지상4 | '17.3 개관 |
| 50플러스 남부캠퍼스 | 구로구 오류로 36-25 | 5,714㎡ | 지하3~지상4 | '18.3 개관 |
| 50플러스 북부캠퍼스 |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 6,289㎡ | 지하1~지상3 | '20.11 개관 |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 광진구 자양동 57-153 | 4,062㎡ | 지상1~지상4 | '23.하반기 개관예정 |

2) 주요사업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발굴, 연계

○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3) 총 소요예산(안) : 16,032,409천원

4) 산출근거

○ 사 업 비 : 7,026,301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9,006,108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출연동의안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의 2023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동 재단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50플러스재단의 개요 >

- 기관명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회승)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 설립일 : 2016. 4. 28.
- 설립형태 : 재단법인(민법제32조의 비영리법인)
- 설립 및 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15.04.02)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5.10.08)
- 설립목적 :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조례상 명칭, 이하 '본 재단')은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음.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연혁 〉

- 재단 발기인 운영 및 창립총회 : 2015.11.06
- 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 : 2016.01.14
- 재단 설립 허가(보건복지부) : 2016.04.26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설립 등기 : 2016.04.28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개관 : 2016.05.02
-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개관 : 2017.03.06
- 도심권50플러스센터 수탁 : 2017.07.01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개관 : 2018.03.05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개관 : 2020.11.27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시설 현황 〉

| 시설명 | 시설현황 | |
|-----------------------------|---|---|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 - 개 관 일 : 2016.5.2.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8동 - 연 면 적 : 3,956㎡, 지하1~지상 4층 - 주요시설 : 모두의 부엌, 상담센터, 교육실, 대강당 등 |  |
|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 - 개 관 일 : 2017.3.6.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내 - 연 면 적 : 4,509.9㎡, 지하1~지상 4층(캠퍼스관리면적 3,683㎡) - 주요시설 : 50+의 서재, 상담센터, 교육실, 대강당 등 |  |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 - 개 관 일 : 2018.3.5.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6-25 - 연 면 적 : 5,714㎡, 지하3~지상 4층(캠퍼스관리면적 3,755㎡) - 주요시설 : 상담센터, 교육실, 대강당, 공유사무실 등 |  |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 - 개 관 일 : 2020.11.27.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8 - 연 면 적 : 6,289㎡, 지하2~지상 3층 - 주요시설 : 상담센터, 교육실, 대강당, 공유사무실 등 |  |
| [수탁시설] 서울시도심권 50플러스센터 | - 수탁기간 : 2019.9.1.~2022.8.31.(3년)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수포로 26길 28 동의빌딩(5개층 임대) - 연 면 적 : 1,053.14㎡, 지하1~지상2층, 지상7~8층 - 주요시설 : 교육실, 회의공간, 좌식형 모임공간 등 |  |

- 본 재단은 2022년 현재 2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23명(정원 150명, 현원 123명)의 직원이 총 343억 8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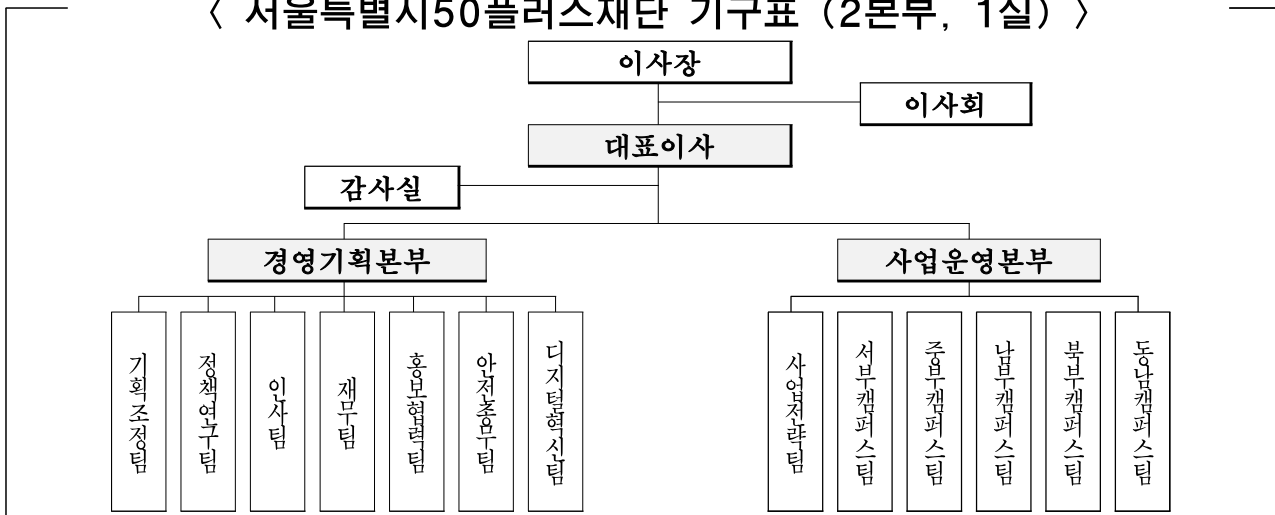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인력(정원/현원) 현황 〉

(2022.8.19.기준 단위:명)

| 구 분 | 계 | 임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계(정/현원) | 150/123 | 1/- | 4/2 | 9/5 | 20/13 | 24/19 | 43/27 | 35/30 | 14/27 |
| 대표이사 | 1/- | 1/- | - | - | - | - | - | - | - |
| 감사실 | 3/2 | - | - | 1/- | - | 1/1 | - | 1/- | -/1 |
| 경영기획본부 | 51/46 | - | 2/1 | 4/2 | 7/7 | 8/11 | 14/12 | 11/5 | 5/8 |
| 사업운영본부 | 95/75 | - | 2/1 | 4/3 | 13/6 | 15/7 | 29/15 | 23/25 | 9/18 |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기구표 (2본부, 1실) 〉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2022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 개황 〉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50+ 일모델 개발 및 확산 | 50+일모델 발굴 및 기반조성 | ① 50+일자리 모델 발굴, ② 50+일자리 사업 기반조성 |
| | 경력전환 및 취업지원 | ① 경력전환·전직지원, ② 서울50+인턴십, ③ 뉴딜인턴십 |
| | 창업·창직 지원 | ① 50+창업·창직 인큐베이팅, ② 50+단체 성장지원, ③ 도시채생창업지원, ④ 창업·창직확대, ⑤ 창업·창직 인프라구축 |
| | 공헌형 일자리 운영 | ① [보조금]50+보람일자리사업 |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현장공감형 50플러스캠퍼스 사업 활성화 | 50+ 맞춤형 교육·상담 제공 | ① 50+생애전환교육과정, ② 50+상담센터운영 |
| | 50+ 당사자 주도형 활동플랫폼 강화 | ① 50+커뮤니티 발굴·지원 |
| | 50플러스캠퍼스 공간 활성화 | ① 캠퍼스운영·관리, ②민관파트너십 연계, ③ 홍보 |
| | 생애전환 지원사업 및 사업성과 확산 | ① 생애전환사업 표준화, ② 디지털에이징, ③ 50+세대지역참여 |
| 50+시정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 50+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 연구 | ① 정책기획 연구 과제 |
| | 50+정책 시민 참여 활성화 | ① 50+당사자 연구 사업 |
| | 50+정책 확산 및 교류 | ① 정책확산·교류사업, ② 50+정책 협력네트워크 |
| 50+세대 사회공헌활동 |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역할 강화 | ① 50+자원봉사단 운영, ② 50+자원봉사단 모델발굴 |
| 지속경영 및 사회적책임 강화 | 시민소통강화 및 고객만족경영 | ① 50+통합온라인플랫폼, ② 고객중심 서비스 구현 |
| |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구축 및 관리 | ①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② 신규캠퍼스 조성 |
| | 사회적 책임 실현 | ① 청렴·인권경영, ② 사회공헌 활동, ③ 노사협력 |
| | 경영혁신 및 성과 내재화 | ① 성과관리 시스템 관리, ② 경영혁신 과제수립·추진 |
| [서울시 수탁사업]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 | | |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재구성)

- 평생교육국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정책개발, 취업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본 재단의 2023회계연도 운영을 위하여 전년(208억 8천 8백만원) 대비 23.2%(△48억 5천 5백만원) 감액한 160억 3천 2백만원 규모(출연동의안 기준, 사업비 70억 2천 6백만원, 인건비·관리비 등 90억 6백만원)의 출연을 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출연동의안과 제출자료의 출연금 규모의 상이

- 본 재단의 2023회계연도 출연금은 출연동의안에서는 160억 3천 2백만원으로 제출하고, 본 동의안과 관련한 제출자료에서는 172억 2천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예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출연금을 포함한 예산편성안은 회계연도 종료 50일전, 「서울특별시의 회 기본조례」는 60일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 제출시까지 예산편성안의 수정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고, 본 동의안은 출연여부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출연금 확정되기 전까지 출연금의 규모는 참고사항으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2023년 출연금 〉

(단위:천원)

| | 2022년 | 2023년 | | |
|-------|------------|------------|------------|-----------|
| | | 출연동의안 | 제출자료 | 차액 |
| 계 | 20,887,905 | 16,032,409 | 17,220,699 | 1,188,290 |
| 사업비 | 9,339,999 | 7,026,301 | 7,026,301 | - |
| 일반관리비 | 10,968,301 | 9,006,108 | 9,382,421 | 1,188,290 |
| 성과급 | 326,905 | | 665,094 | |
| 예비비 | 252,700 | | 146,883 | |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평균수명의 연장, 미흡한 노후대비, 빠른 퇴직, 경기악화 시 퇴출 1순위인 50세 이상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교육, 취·전직,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감안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필요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규모의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본 재단을 규율하는 조례, 본 재단의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동의안(이하 '본 동의안') 제명 등에서 본 동의안의 '대상'은 모두 본 재단의 명칭을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명칭의 상이

- 조례 제명 : 50플러스재단
- 조례 조문 :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
- 법인 등기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본 재단 정관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본 출연동의안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본 출연동의안의 대상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조례 제명과 본 재단의 명칭

- 조례의 제명은 사무의 관할과 권한·의무 주체(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공간적 효력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명의 첫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음. 이에 조례 제명에 필수 표기 사항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제외하면, 조례 제명 상 본 재단의 명칭은 '50플러스재단'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적용범위)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제2조(명칭) 법인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본 재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명칭 발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 |
|------------|------------------------------|
| 등기번호 | ██████████ |
| 등록번호 | ██████████ |
| 명 칭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3층(공덕동) |

목 적

이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사항. 발급일:2022.9.6.

- 출연은 조례를 기준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로 출연을 결정하며, 본 동의안의 출연대상이 본 재단임을 유추가 아닌 확정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있거나, 출연대상이 조례의 규정과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 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특별시의회가 심의하는 안건 중 동의안은 동의에 대해 가·부 의결만 가능하며, 동의안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정은 불가능한바, 본 동의안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연여부에 대한 심의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출연동시에 앞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먼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재단의 상이한 명칭 사용은 공식문서 뿐 아니라 사업에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대시민 홍보나 사업명의 경우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그 사업명칭 등을 다양하게 활용(약어, 신조어, 특정반영 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중 법령으로 규정된 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절차적 합법성과 요건의 충족여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대상이 불명확한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평생교육국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둘째, 본 재단은 2016년 설립 이후 재단의 정체성 확립(장년층의 노후준비 등)과 50플러스재단 - 50플러스캠퍼스 - 50플러스센터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현재까지 각 단계별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 본 재단의 50플러스캠퍼스는 각 자치구별 담당부서 또는 담당기관의 부재로 지원·거점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뿐 만 아니라, 직접사업 수행을 위해 본 재단의 생애전환지원본부 내 동일·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4개의 캠퍼스(서부, 중부, 남부, 북부)를 운영하고 있어, 본 재단의 기능 배분 및 인력배치가 적정한지, 과도한 정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50플러스재단 정책의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 본 재단에서 구축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최말단은 ‘50플러스센터’이나, 모든 자치구가 센터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자치구에 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설치된 지역의 모든 대상자들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도 아닌바, 각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개념으로 설치된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기능과 역할 조정도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0플러스캠퍼스 및 센터 설치 현황 〉

(단위:천원)

| 구분 | 자치구 |
|-----|--|
| 캠퍼스 | 서부(은평), 중부(마포), 남부(구로), 북부(도봉) |
| 센터 | 종로,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 강동, 양천, 성동, 광진 |
| 미설치 | 동대문, 강북, 중랑, 관악, 용산, 중구, 송파, 강남 |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 재구성

- 50플러스 사업 초기에는 자치구 등의 참여 부족, 관련 시설의 부족 등으로 중간조직인 50플러스캠퍼스에서 자치구의 50플러스센터와 같은 역할 수행도 필요했으나,
- 현재는 50플러스 정책을 위한 시설들이 다수 설치되어 캠퍼스 간, 센터 간 사업중복, 기능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 캠퍼스별 접근성, 시설의 규모 및 활용도 등이 서로 상이하며,
- 특히, 각 권역별 50대 이상 장년층의 특성과 요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모델을 기반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50플러스캠퍼스 설치 현황 〉

| 구 분 | 서부캠퍼스 | 중부캠퍼스 | 남부캠퍼스 | 북부캠퍼스 |
|--------------|--|--|--------------------------|------------------------|
| 정원 | 15명 | 15명 | 15명 | 15명 |
| 현원 | 15명 | 14명 | 15명 | 15명 |
| 개관일자 | 16.5.2 | 17.3.6 | 18.3.5 | 20.11.27 |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2길7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구로구 오류로 36-25 | 도봉구 마들로13길 84 |
| 규 모 (연면적) | 3,956㎡ 지하1/지상4층 | 4,509㎡ 지하1/지상1층, 2층, 4층 ※ 재단본부 : 3층 | 5,714㎡ 지하 3층~지상 4층 | 6,280.62㎡ 지하1층~지상3층 |
| 대지면적 | 8,943.2㎡ | 28,534㎡ | 19,730㎡ | 7,663㎡ |
| 시설유형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
| 공통사업 | 서울50+뉴딜인턴십, 50+적합일자리, 공유사무실, 교육운영, 상담센터, 50+커뮤니티 지원, 50+자원봉사단 운영, 공간기획 및 협력 기획사업 | | | |
| 개별사업 | 취업지원, 창업·창직 | 전직지원, 창업스쿨, 사회공헌 프로그램 | 디지털취약계층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 - |

출처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재구성)

- 50플러스 정책의 사업분야는 상담, 교육, 커뮤니티, 사회공헌, 경력전환(취·창업) 등으로, 각 캠퍼스를 분야별로 특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중간지원조직 및 거점조직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캠퍼스 간 또는 캠퍼스와 센터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을 해소하고, 전문성 확보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인력운영과 예산운영(인건비) 효율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재단은 조직신설(2020년 사업개발팀, 캠퍼스기획팀, 운영사업팀 등 신설, 2021년 동남캠퍼스 설치 추진 등) 등의 이유로 최근 3년 동안 정원을 47명(103명 → 150명) 증원하였으나, 정원 대비 현원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인력현황 〉

(단위:명)

| | 19.01.01. | 19.03.31. | 20.02.04. | 20.03.24. | 20.05.20. | 21.06.24. | 22.04.22. |
|----|-----------|-----------|-----------|-----------|-----------|-----------|-----------|
| 정원 | 103 | 103 | 128 | 128 | 128 | 150 | 150 |
| 현원 | 71 | 89 | 98 | 98 | 98 | 118 | 127 |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재구성)

- 본 재단의 정원 대비 현원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사무를 추진할 적정 수준의 인력을 미확보하였거나, 업무 대비 과도한 정원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했는지 여부, 정관의 정원 산정과 매년 수립해야 할 인력운영 계획을 성실히 수립했는지, 사업 계획에 따른 인력확충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1년 정원을 128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현원은 123명으로, 본 재단의 정원 확대의 필요성 및 정원 조정의 타당성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은 인건비 편성에 대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정원보다 현원이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예산 편성시점에 채용계획이 확정되거나,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용될 인력의 인건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자·출연기관 관련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


-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2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기준으로 편성
 - 편성된 예비비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결원율이 정원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실시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 본 재단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022년 인건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어야 하나, 본 재단은 인건비 편성의 예외적 경우를 활용하여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음.
- 본 재단은 2021년 하반기 총 22명을 채용할 계획을 수립(2021.7.6.)했으나, 두 차례(2021년도 2차-8월, 3차-10월)에 걸쳐 총 15명(2021년도 2차 : 10명 =일반직9+기간제1, 2021년도 3차 : 5명 =일반직3+연구직1+기간제1)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본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한바 있음.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2021년 하반기 채용공고 내역 〉


2021-12-17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21년 3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1-10-29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년 제3차 직원채용 공고] 

2021-10-1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21년 2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1-08-27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21년 2차 직원채용 모집공고(~9.7, 18시)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 - 새소식 - 채용공고 발취

- 본 재단은 2021년 말 현원 117명과 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15명을 합산하여 132명의 인건비만을 편성할 수 있고, 채용계획에 따라 증원예정인 22명을 포함해도 139명을 인건비만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
 - 본 재단은 정원(150명)을 기준으로 87억 4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최소 6억 4천만원(87억4천만원/150명*11명)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 인건비 과다편성은 2022년도 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도 발생했고, 2023년도에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 2021회계년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인건비’ 결산내역〉

(단위:천원)

| | 2021최종예산액 | 집행액 | 불용액 | 불용률 |
|-------|------------|-----------|---------|------|
| 일반운영비 | 10,281,768 | 9,409,909 | 852,859 | 8.3% |
| 인건비 | 7,209,155 | 6,568,906 | 640,249 | 8.9% |

출처 : 본 출연동의안 부속서류(결산서)-예산결산보고서-지출예산결산보고서 52p 발취

- 2023년 인건비는 현원(2022년 7월 기준, 127명)을 기준으로 전년(87억 4천 3백만원) 대비 14.9%(13억 2백만원) 감액한 74억 4천 1백만원 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인건비 편성현황 〉

(단위:천원)

| | 2022예산 | 2023예산 | 증감액 | 증감률 |
|----------|------------|------------|------------|--------|
| 총계 | 20,653,144 | 17,220,699 | △3,432,445 | △16.6% |
| 일반관리비 소계 | 10,938,301 | 9,382,421 | △1,555,880 | △14.2% |
| 인건비 | 8,743,798 | 7,441,511 | △1,302,287 | △14.9% |
| 인건비 | 8,743,798 | 7,441,511 | △1,302,287 | △14.9% |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재구성)

- 2023년 인건비 편성은 현원(127명)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본 재단은 지속적인 채용에도 불구하고, 매달 현원이 감소하고 있어 출연동의안 작성 당시(7월, 128명) 현원과 8월 기준 현원(123명)도 차이가 있는바,
 - 본 재단의 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서울특별시에 보고된 본 재단의 인력충원계획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예산의 심의·확정 시기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인력(정원/현원) 현황 〉

(2022.8.19.기준 단위:명)

| 구 분 | 계 | 임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2021년 12월 | 150/117 | 1/- | 4/4 | 9/5 | 20/13 | 24/14 | 43/23 | 35/40 | 14/18 |
| 2022년 2월 | 150/129 | 1/- | 4/4 | 9/5 | 20/12 | 24/15 | 43/24 | 35/41 | 14/28 |
| 2022년 7월 | 150/122 | 1/- | 4/2 | 9/5 | 20/13 | 24/19 | 43/26 | 35/30 | 14/27 |
| 2022년 8월 | 150/123 | 1/- | 4/2 | 9/5 | 20/13 | 24/19 | 43/27 | 35/30 | 14/27 |

출처 : 2021년 12월 업무보고서, 2022년 2월 및 7월 업무보고서, 2022년 8월 출연동의안 관련 제출자료

- 예산편성기준은 결원율이 정원 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재단은 신규조직 편성계획 및 인력증원계획도 서울특별시에 보고된 바가 없어, 합리적 인력운영을 위해 동 기준에 따라 본 재단의 조직진단과 정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인력현황 〉

(단위:명)

| | 19.01.01. | 19.03.31. | 20.02.04. | 20.03.24. | 20.05.20. | 21.06.24. | 22.04.22. |
|-----|-----------|-----------|-----------|-----------|-----------|-----------|-----------|
| 정원 | 103 | 103 | 128 | 128 | 128 | 150 | 150 |
| 현원 | 71 | 89 | 98 | 98 | 98 | 118 | 127 |
| 결원율 | 31.1% | 13.6% | 23.4% | 23.4% | 23.4% | 21.3% | 15.3% |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재구성)

※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 결원율이 정원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실시

- 본 재단의 부적정한 인력 운용은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력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비합리적인 인력운용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인력 운영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원칙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평생교육국의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넷째, 본 재단은 연평균 265건, 최근 3년간 총 795건의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을 하였음.

〈 최근 3년간 본 재단의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현황 〉

(2022.7.기준, 단위:건)

| 합계 | 2022.7. | 최근 3년간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건수 | | | | |
|-----|---------|-------------------------|-----|------|------|------|
| | | 1년 평균 | 소계 | 2021 | 2020 | 2019 |
| 848 | 53 | 265 | 795 | 269 | 267 | 259 |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재구성)

- 2021회계년도 기준 서울특별시는 총 47조 7,591억원으로 4,568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던 중 166건의 전용이 있었고,
 - 평생교육국은 총 4조 5천억원으로 총 86개의 세부사업 추진 중 전용 4건, 변경사용 8건이 있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35건의 세부사업을 운영하는 본 재단이 연평균 265건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매우 과다한 수준으로, 통상적인 예산운용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임.

〈 202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전용 내역 〉

(단위: 건, 억원)

| 구 분 | 2021 | | 2020 | | 증감내역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166 | 264 | 211 | 594 | Δ45 | Δ330 |
| 일반회계 | 144 | 204 | 174 | 479 | Δ30 | Δ275 |
| 기타특별회계 | 22 | 60 | 37 | 115 | Δ15 | Δ55 |

출처 : 202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보고서

〈 2021회계년도 평생교육국 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 〉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 소계 | | 전용 | | 변경사용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12 | 2,364 | 4 | 1,167 | 8 | 1,197 |
| 일반회계 | 10 | 1,788 | 4 | 1,167 | 6 | 621 |
| 균형발전특별회계 | 2 | 576 | - | - | 2 | 576 |

출처 : 2021회계년도 평생교육국 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발취 및 재구성

※ 예산의 변동

- 예산의 원칙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목적 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각 행정기관 또는 하부·소속기관 또는 그 내부적으로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 사업간 예산을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대원칙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과 재해와 같이 여건과 상황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며, 신속하게 행정대응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 등으로 예산의 변동이 가능하며, 추후 의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의 이용 :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의회의 승인 후 이용가능, 출연기관은 이사회 의결)
 - 예산의 전용 : 단위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지방자치단체장, 출연기관은 대표이사)
 - 예산의 변경사용 : 세부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실·국장, 출연기관은 대표이사)
 - 예산의 이체 : 조직의 기구·직제·정원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의 개폐로 관계 기관 간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
- 본 재단은 최근 3년간 사업의 큰 변동이 없었고, 연례적인 사업들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 많다는 것은 부실한 사업계획을 반증하거나, 사업마다 세밀한 분석이 생략되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 과도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이 매년 반복·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실한 사업계획과 비효율적인 예산배분에 대해 개선 또는 시정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바, 평생교육국이 본 재단의 출연금 편성에 대해 합목적성,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검토 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본 재단에 대한 출연금 최종 편성시 본 재단의 각 사업별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출연금 재산출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되며,
- 각 사업마다 필요한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을 감소시켜 자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취지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해 예외적 사항으로 단체장 또는 부서장 등의 승인하에 예산의 변동(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 등)이 가능하며,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재단의 내규 중 「회계 규정」은 예산의 이용은 이사회 승인으로, 예산의 전용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예산관리 시행 내규」는 대표이사에게 이용·전용·변경의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대표이사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재단의 「사무위임 전결 내규」에서도 본부장, 단장, 센터장, 팀장 등의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한 전결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회계 규정」제6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대표이사는 예산 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정책사업간의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단위사업 이하의 예산의 전용은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해 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예산 관리 시행 내규」제13조(예산변경의 통제) ① 제10조 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예산 운용의 융통성을 위해 예산과목 간 일부를 변경(이용, 전용 및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용, 전용과 변경은 예산 운용의 융통성을 위한 예외 사항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③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원칙적으로 예산관리자, 총괄예산관리자의 협조 및 대표이사의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사무위임전결내규」 별표. 사무위임 전결 사항 발취

| | 세 부 사 항 | 전결권자 | | | | 협 조 |
|------|---------------------|------|----|--------|------|-----|
| | | 담당 | 팀장 | 본부장/실장 | 대표이사 | |
| (중략) | | | | | | |
| 예산 | 1. 종합예산 편성 및 조정 | | | | ○ | |
| | 2. 실행예산 편성 및 운용(배정) | | | ○ | | |
| | 3. 예산추산 | ○ | | | | |
| | 4. 예비비 사용 | | | | ○ | |
| | 5. 예산 이용 및 전용 | | | | ○ | |
| | 6. 예산 이월 | | | | ○ | |
| (중략) | | | | | | |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재구성)

- 본 재단은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본부장, 단장, 센터장, 팀장 등이 총 848건의 예산 변동 중 71.3%(605건)를 승인했는데, 임의적, 자의적 예산의 변동과 집행이 본 재단에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법령과 내규에서 규정한 사무의 체계나 원칙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의 지도와 점검,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승인권자 현황 >

(2022.7.기준, 단위:건)

| | 소계 | | 2022.7. | 2021 | 2020 | 2019 |
|---------|-----|-------|---------|------|------|------|
| | 건 | 비율 | | | | |
| 소계 | 848 | 100% | 53 | 269 | 267 | 259 |
| 서울시 승인 | 6 | 0.7% | 6 | - | - | - |
| 이사회 승인 | - | 0.0% | - | - | - | - |
| 대표이사 승인 | 237 | 27.9% | 42 | 18 | 38 | 139 |
| 본부장 승인 | 90 | 10.6% | 5 | 32 | 32 | 21 |
| 단장 승인 | 40 | 4.7% | - | 22 | 18 | - |
| 센터장승인 | 39 | 4.6% | - | 15 | 24 | - |
| 팀장 승인 | 436 | 51.4% | - | 182 | 155 | 99 |
| | | 605 | 71.3% | | | |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재구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출연기관법」)은 출연기관의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결재문서의 제목이 공개(사안에 따라 내용 비공개)되는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에는 본 재단은 예산의 변동에 대해서는 기록조차 없는데,

- 본 재단의 방만한 운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평생교육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본 재단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근절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섯째, 본 재단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예산편성액은 173억원 규모이나, 추경 등을 통해 매년 44.3%(평균 76억 7천만원)를 증액하여 최종예산은 평균 250억원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2022년도 본 재단의 예산은 추경을 통해 61.8%(131억원)를 증액했고, 매년 반복하는 과도한 예산 증액이 적정한지, 2023년도에도 반복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50플러스재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단위:천원)

| 연도 | 당초예산 (예산편성) | 추경 증감 | | 최종예산 | 집행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
| | | 증감액 | 증감률 | | | | |
| 2022 | 21,249,727 | 13,135,314 | 61.8% | 34,385,041 | 10,399,557 | 23,985,484 | 69.8% |
| 최근 3년 평균 | 17,331,940 | 7,676,662 | 44.3% | 25,008,602 | 22,495,410 | 2,513,192 | 10.0% |
| 2021 | 18,548,529 | 11,250,917 | 60.7% | 29,799,446 | 27,226,080 | 2,573,366 | 8.6% |
| 2020 | 18,188,442 | 4,719,902 | 26.0% | 22,908,344 | 20,847,726 | 2,060,618 | 9.0% |
| 2019 | 15,258,850 | 7,059,166 | 46.3% | 22,318,016 | 19,412,424 | 2,905,592 | 13.0% |

출처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

- 본 재단의 예산 증액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정책실의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 보람일자리 사업은 50세 이상 세대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복지정책실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본 재단은 반복적·지속적 보조금 수령으로 '서울특별시의 공모사업'이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하고, '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022년 본 재단의 외부공모, 위탁사업, 대행사업 현황 〉

(단위:천원)

| 구분 | 주체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지급형태 | | |
|------|-----|-------------|-------------------------|------------|------|------|-------|
| 위탁사업 | 서울시 | 도심권 50플러스센터 | '17.7.1.~ '22.11.29. | 820,260 | 출연금 | | |
| 보조사업 | 서울시 | 보람일자리 사업 | '22.1.1.~ 12.31. | 11,162,048 | 보조금 | 100% | 88.1% |
| 공모사업 | 서울시 | 서울형 뉴딜일자리 | '22.1.1.~ 12.31. | 1,514,828 | | | 11.9% |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

〈 보람일자리 관련 서울특별시의 2022년도 예산편성 현황 〉

| | 2021 | 2022 | 증 감 | 예산 과 목 및 내 역 (단위:천원) |
|----------|------------|------------|------------------------|------------------------------|
| 보람일자리 사업 | 14,916,000 | 18,426,918 | 3,510,918 | |
| | | | (100-201-01) 사무관리비 | 50,000 |
| | | | ○ 50+일자리 정책 홍보 | 50,000,000원 = 50,000 |
| | | | (100-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6,000 |
| | | | ○ 50+보람일자리 업무추진 | 6,000,000원 = 6,000 |
| | | |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16,498,918 |
| | | | ○ 사회공헌일자리지원(공모) | 16,498,918,000원 = 16,498,918 |
| | | |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872,000 |
| | | | ○ 우리동네돌봄단 등 | 1,872,000,000원 = 1,872,000 |

출처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서(복지정책실) 605p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보람일자리 수행현황 〉

(단위:천원)

| 연도 | 구분 | 주체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
| 2022 | 보조사업 | 서울시 | 보람일자리 사업 | '22.1.1.~'22.12.31. | 11,162,048 |
| 2021 | 보조사업 | 서울시 | 보람일자리 사업 | '21.1.1.~'21.12.31. | 7,586,909 |
| 2020 | 보조사업 | 서울시 | 보람일자리 사업 | '20.1.1.~'20.12.31. | 3,301,766 |
| 2019 | 보조사업 | 서울시 | 보람일자리 사업 | '19.1.1.~'19.12.31. | 3,852,755 |

출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

○ 보람일자리 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적이며,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도 본 재단의 50플러스캠퍼스와 각 자치구의 50플러스센터 등으로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보람일자리 사업을 서울특별시의 사업(공모사업, 복지정책실)이 아닌 본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이관하고, 사업재원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편성할 필요는 없는지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반드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이유에 대해 논리적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출자출연기관법」 및 그 시행령은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의 110이상’인 경우에는 출연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로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보호하고, 출자·출연기관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한 것으로, 단기간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점증적 예산투자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 재단에서 수행하는 보람일자리 사업의 규모는 2020년 33억원에서 2021년 76억원, 2022년에는 111억원 규모로 이례적으로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라는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한 증액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 본 재단의 50플러스 정책은 은퇴 후 50여년이라는 기간에 적용되는 생애 전환 또는 생애재설계와 그에 맞는 취·창업 및 사회공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통상적인 일자리 사업과 같이 긴급한 사향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는 보람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본 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할 경우 법령의 취지(출연기관의 사업 적정성 검증, 단기적, 집중적 사업 지양 등)와 규정 등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보조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행정편의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본 재단의 사업부실, 방만한 예산운용 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법령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법규 적용을 회피하며, 방만한 사업운영을 위한 적극적 편법 활용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기반으로 보람 일자리 사업을 본 재단의 고유사업화 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50플러스재단의 부적정한 인력운영, 조직체계, 방만한 예산집행, 임기응변식 사업추진은 과도한 보조금을 회계연도 내 소모하기 위한 잘못된 관행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평생교육국의 지도·점검, 관리·감독 및 검사, 감사 등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철저한 사전조사와 세밀한 사업설계,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뿐만 아니라 대시민 신뢰성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5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생애재설계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본 재단의 출연은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본 재단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들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출연의 필요성을 있을 것으로 보이나,
 - 본 재단의 사업 추진체계, 인력구성, 수입구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합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평생교육국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평생교육국이 마련한 개선책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 후 출연의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153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고령사회를 맞아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운영시설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5개소(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예정))

| 명칭 | 소재지 | 건축연면적 | 층수 | 비고 |
|-------------|----------------|--------|---------|------------------|
| 50플러스 서부캠퍼스 | 은평구 통일로 684 | 3,956㎡ | 지하1~지상4 | '16.5 개관 |
| 50플러스 중부캠퍼스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4,509㎡ | 지하1~지상4 | '17.3 개관 |
| 50플러스 남부캠퍼스 | 구로구 오류로 36-25 | 5,714㎡ | 지하3~지상4 | '18.3 개관 |
| 50플러스 북부캠퍼스 |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 6,289㎡ | 지하1~지상3 | '20.11 개관 |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 광진구 자양동 57-153 | 4,062㎡ | 지상1~지상4 | '23. 하반기 개관 (예정) |

나. 주요사업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발굴, 연계
-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다. 총 소요예산(안) : 16,032,409천원

라. 산출근거

- 사 업 비 : 7,026,301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9,006,108천원

마. 출연의 필요성

-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 기존 노년층과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진 장년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전담기관으로,
- 시, 유관기관, 민간과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상호협력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당사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장년층의 인생 후반기 준비를 위한 전직 및 일자리 지원기능 강화,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 노후준비 등 차별화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 및 캠퍼스 운영비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박태경 (☎ 2133-3975)